제도개선 간담회 (전력부문) 개최

▲ 간담회 전경 (팔레스 호텔)

▲ 이기성 협회회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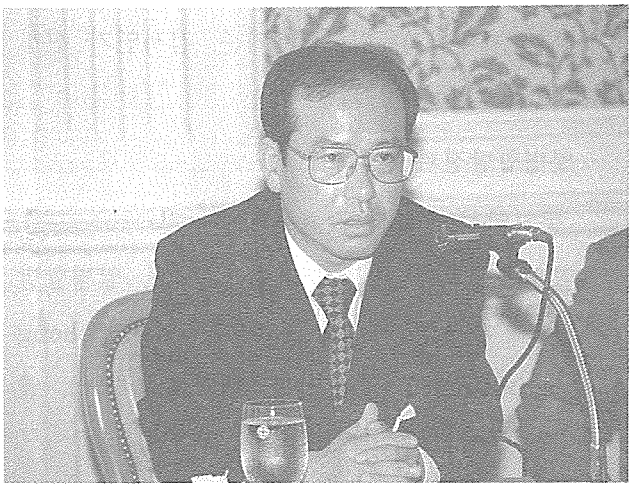

▲ 박수훈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심의관

○ 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종합된 의견을 정부 및 관련기관 담당인사를 초청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고자 1996년 9월 13일에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약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간담회에는 초청인사 4명과 협회회장 및 회원사 임원등 11명이 참가하였으며 협회 사무국장 사회와 회장의 주재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 초청인사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심의관	박수훈
한국전력공사 영업처부처장	석우길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단장	도기종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부장	황계연

- 회원사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반월열병합발전소 상무이사	김광호
중부지역산업단지관리공단	
구미열병합발전소 상무이사	장양히
대구염색공업공단 상무이사	배효주
울산석유화학지원(주) 이사	이상성
벽산에너지(주) 발전소장(이사)	최기순
(주)신호상사 오산열병합발전소	
사업소장(이사)	최기순
(주)미원 열병합발전소장	송창준
(주)포스코켐 공무부장	박양채
한전기공(주) 부장	허 만
현대전자(주) 부장	김해수
협회 사무국장	배성준

○ 금번 간담회는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전에 상호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회원사와는 상

호 이해(利害)가 상충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의 접근을 보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과 공해감소를 국익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도 있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앞으로 연구와 논의를 계속해야할 과제로 인식을 같이 하였다.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자료를 보완하여 건의를 해주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협회에서는 그후 국내 전력요금 및 수전 최대전력, 일본의 전력회사가 열병합발전 전력을 구매하는 조건 등을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 간담회에서 주로검토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역송전 전력량 요금개선

현 행 제 도 의 문 제 점	개 선 방 향
◎ 현행 역송전 전력량(kwh) 요금 가. 역송전 전력량 요금(95. 5. 1 요금) 〔산업용 전력(을) 선택Ⅱ 고압A 요금 적용〕 (kwh당 원) 여 름 / 6월 / 4.5.9월 / 겨울 심야시간 24.60 / 24.60 / 24.60 / 24.60 주간시간 64.30 / 45.40 / 37.40 / 42.30 저녁시간 45.40 / 37.40 / 45.40 / 50.10 ○ 제시분 : 산업용(을) 선택Ⅱ 고압A 요금 기준으로 역송전 단가산정 평균판매단가 : 37.62원/kwh 나. 문제점 ① 매년 전력생산원가(원재료비,인건비,경비) 증가분에 대한 원가보상 대책 없음 ② 한전 수전분은 산업용(병) Ⅰ 고압A 요금납부	1. 역송전 전력량 요금 적용 원칙 가. 역송전 전력량 요금 : 한전 판매요금 산업용(을)Ⅱ 고압A 요금의 계절별 시간대] 나. 한전판매 전력량 요금 : 계약종별 요금 적용 2. 개선방안 ⊙ 제1안 산업용(을) Ⅰ 고압A 또는 산업용(병) Ⅰ의 A 요금 적용 평균판매단가: △(을) Ⅰ 고압A : 39.98원/kwh △(병) Ⅰ 고압A : 39.74원/kwh ※ 기본요금과 동일기준(동일종별) ⊙ 제2안 전력량 요금 = 산업용(을)Ⅱ 고압A요금 × 1.05(또는 1.1) (원가상승분)

- 전력 기본요금 개선

현 행 제 도 의 문 제 점	개 선 방 향
○ 현행 기본요금 산정방법 1. 역송전력 : $3{,}810원 \times \frac{월간\ 계통\ 피크시\ 수급전력}{월간\ 수급전력량(총량)}$ × 당월 피크시 최대전력	1. 역송전력의 기본요금 산정방법 개선 $3{,}250원 \times \frac{직전\ 12개월중\ 최대\ 계통\ 피크시\ 수급전력}{월간\ 수급\ 전력량(총량)}$ × 당월 피크시 최대전력

현 행 제 도 의 문 제 점	개 선 방 향
2. 수전전력 : 직전 12개월 최대 수요전력 × 3,810원/KW	2. 수전전력의 기본요금 산정방법 개선 직전 3개월 최대수요전력×3,810원/kWh

- 검사주기

자가용 전기설비중 발전설비에 대한 검사시기 (전기사법 시행규칙 제46조)

현 행 제 도 의 문 제 점	개 선 방 향
o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 (발전기 계통포함)의 검사 시기 - 1회 / 2년 o 보일러 검사시기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3조, '96. 6. 18. 개정) - 1, 2년째 자체검사 - 3년째 개방검사	o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 (발전기 계통 포함)의 검사시기를 보일러의 검사시기와 같게하여 검사를 위한 설비정지를 최소화함. - 1, 2년째 : 자체검사 - 3년째 : 전기안전공사 검사

- 안전관리자 기준완화

기력발전소 기계안전관리사 자격요건 완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현 행 제 도 의 문 제 점	개 선 방 향
o 기계기사 2급자격 소지자는 압력이 제곱센치미터당 60킬로그램미만의 기력 설비 유지운용	o 기계 기사 2급 소지자도 압력을 100kg/㎠로 상향 조정토록 범위를 확대건의

o 협회 회장 및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박수훈 심의관은 간담회를 끝마치면서 종합적인 의견발표가 있었다.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실 심의관

오늘 협회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업체에서 많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데 감사합니다. 오늘 주로 토의된 전력 기본요금이나 역송전 단가등은 원가보상원칙이 지켜지는 토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터빈에 대한 검사문제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보일러의 압력, 위험도등과 비교하여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오늘 토의된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근거를 첨부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주시면 열병합발전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회 장

오늘 바쁜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간담회에 참가하여 주신 통산부 전력국장님 그리고 관계 기관 회원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력단가라든가 검사문제 등에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또 관련기관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개의 수치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라는 것이 각각다른 상황하에서 나오게 되면 서로 다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합발전은 국가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또 이와같은 모임을 자주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상호 이해하여 합의점을 도출해 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